창녕군 道 종합감사 결과

우리 도는 도민의 알 권리 보장과 투명한 행정을 실천하기 위하여 2002년 7월부터 『행정감사결과』를 공개하고 있습니다. 다음 사항은 2006. 5. 1 ~5. 9까지 창녕군에 대하여 실시한 도 종합감사결과입니다.

I. 監査概要

- □ 감사유형 : 종합감사
- □ 감사범위 : 2004. 3월부터 2006. 5월까지의 군정업무 전반
- □ 조치사항
 - ◇ 행정상 조치 : 91건(시정 52, 주의 39) 현지조치 61건 포함
 - ◇ 재정상 조치 : 384백만원(감액 277, 추징 98, 기타 9)
 - ◇ 신분상 조치 : 29명 (훈·경고 29)

Ⅱ. 垂範事例

- Ⅱ 창녕외국어교육특구 추진
 - 사업개요(내용)
 - 특구위치 및 특화사업자 : 관내 9개 고등학교, 창녕교육청
 - 특구면적 : 275,423 m² (83,315평)
 - 특화사업 : 고교영어교육강화를 위한 외국인 교원 및 강사

임용배치 영어체험캠프 운영 및 사이버외국어

학습센터운영, 교육여건개선 사업 전개 등

○ 추진상황

- 특구계획안 지정 승인 : '05. 2. 2
- 9개 고등학교 외국인교원 1명씩 배치 : 9명('05. 8. 5~9. 2)
- 사이버외국어 학습센터 시스템 구축 : '06. 5월
- 학습센터 외국인 강사확보, 교재개발, 학생모집과 운영: '06. 7월

○ 성 과

- 「외국어교육특구」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교육창녕의 이미지 제고
- 외국어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기회 평등 제공
- 해외유학 연수비용 등 사교육비 절감(570,000천원)

② 국·공유재산 처분에 따른 등기촉탁

- 사업개요
 - 국·공유재산의 처분시 소유권 이전등기를 군에서 직접 촉탁 등기하여 민원인의 편의와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고,
 - 소유권 이전 지연으로 인한 분쟁소지 해소
- 추진실적 : 94건('04년 39건, '05년 55건)

③ 행정봉투 뒷면을 활용한 민원시책 안내

- 사업개요
- 홍보내용 : 민원시책 및 민원사무 안내
- 활용방법 : 민원처리 결과 회신시 활용(행정봉투 2호)
- 소요예산 : 4,000천원
- ※ 연간 봉투활용 55,000매(제증명 30,000, 유기한 민원 3,000, 등기필 통지 10,000, 자동차등록 5,000, 기타 7,000)

○ 추진실적

- 민원봉투 제작 : 분기 1회 및 수시
- 주요시책 홍보내용 및 실적 : 6,000매 (새로운 민원시책 안내, 구비서류 안내, 인감증명 발급 및 제증명온라인 발급제도 안내 각 2,000매)

○ 기대효과

- 연중 지속적인 민원시책 안내로 주민편의 제공
- 행정봉투 여백 활용으로 경제적 비용 절감

④ 2006정월대보름 억새태우기 안전사고 대비 상해보험 가입

- 행사개요
- 일시 : 2006. 2.12(월) 10:00 ~ 20:00
- 장소 : 화왕산 정상 억새평원
- 참여인원 : 50,000여명
- 주최: 창녕군, 주관: 배비우산악회(창녕군의회, 창녕경찰서, 부곡관광협의회)

○ 현실태(문제점)

- 전국 유일의 야간 산상 축제행사로 행사 특성상 화왕산 정상 일원에서 개최 되며, 특히 적정 수용인원 30,000명을 초과한 50,000여명의 관광객이 운집하므로 등하산시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음(연 10~15건 사고 발생)

○ 개선내용(성과)

- 2006행사시 주관측이 행사참가자 일괄하여 상해보험 가입으로 사고수습에 따른 공무원들의 애로사항 해소 기여('06년 사고발생 11명)

5 장기 방치 공장용지의 기업유치 추진

○ 사업개요

- 위 치: 창녕군 계성면 광계리 산26번지외 5필지
- 면 적: 71,905 m²
- 소 유 자 : (주)삼환까뮤

○ 추진상황

- 양산시 소재 경남산업건기(주) 대표 윤치순이 사업확장등을 위하여 대상지 물색
- ⇒ 창녕군(지역경제과)에서 상세한 투자여건 안내와 설명으로 기업유치 기여

- 창녕군 기업유치 활동상황

- 산업개발촉진지구 선정을 추진하여 원활한 기업활동 지원
- 진입도로 건설을 위한 도비지원 건의 및 군비 확보 추진
- 투자자의 생산활동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입도로에 대한 임시적 정비시행 및 한국전력공사에 조속한 전력 공급 요청

○성 과

- 93년 이후 방치되어오던 대규모 공장용지 활용
- 고용창출 300명 , 투자유치효과 200억원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

Ⅲ. 主要 指摘事項

① 공유재산 권리보존절차 미이행 등 관리소홀

- 공유재산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 등 권리보존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함.
 - 창녕군 ○○과, ○○○○과, ○○○○과에서 공유재산에 대한 권리 보존절차를 이행함에 있어
 - 지방재정법 제74조내지 제7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및 창녕군 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20조 등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취득전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과 취득후 등기·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이행 등 조치를 이행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함.

⇒ 행정상 : 주의

② 사회단체 보조금집행 감독소홀

-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 재무회계규칙등에서 정하고 있는
 지급기준 준수와 철저한 정산검사 등을 이행해야 함에도 소홀히 함.
 - 창녕군재무회계규칙 제50조에 10만원이상 각종 대가 지급시는 계좌입금 함이 원칙이고,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에 관한조례 제12조에 따라 보조 사업전반에 대하여 검사를 하거나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,
- ○○○○회 창녕군지회외 2개사업의 보조금 141,000천원을 지원하여 정산하면서 간이영수증으로 71건 70,544천원 처리, 이중 23건은 현금으로 6,000천원 처리하였는데도 정상적으로 처리한 것처럼 정산보고를 함으로써 보조금집행 감독을 소홀히 함.

⇒ 행정상 : 주의

③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징수 및 체납자관리 소홀

- 하수도법 제21조 및 창녕군하수도사용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하수도사용료 체납자에 대하여는 독촉, 재산압류 등 행·재정적 조치를 취하여 채권을 사전에 확보하여야 함에도,
- ○○○○장내 체납된 11개업소(134건) 43,986천원의 하수도사용료는 소유권이 수차례 변경되었으나 체납자 현황 조차 미파악 등 체납자 관리소홀
- 특히 7개업소는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부 및 재산압류 등 적기 미이행 으로 체납업소의 임의 경매시 관련법령에 의한 배당금 신청도 못하는 등 관리 소홀

⇒ 행정상 : 주의

④ 농지전용허가(협의)지 사후관리 소홀

- 농지법 제36조 제1항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불법농지에 대해 조사하여 농지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즉시 원상회복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 - 창녕군 ○○읍 ○○리 ○○번지 등 2건의 농지에 대하여 건축물 신축을 위한 전용허가를 득하여 건축물 준공 후 연접한 농지를 불법 전용하여 사용하고 있는데도 행정조치를 소홀히 함.

⇒ 행정상:시정

[5] 음반·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업소 행정처분 부적정

- 음반・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등에서 노래연습장업자가 접대부를 고용하고 주류를 판매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40일임에도,
- 항녕군(○○과)에서는 행정처분 기준보다 적은 영업정지 30일의 행정처분을 함으로서 법집행의 형평성 상실 및 행정의 공신력을 실추시킴.

⇒ 행정상 : 주의

⑥ 국유재산 무단점용 및 농지불법전용 행위에 대한 행정조치 소홀

- 국유재산법 제51조의 규정에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한자는 변상금 징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있고, 농지법 제44조 제1항은 농지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,
- 농림부 소유 구거(국유재산) 2필지 199㎡를 무단으로 점용한 자에 대하여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 징수 등 행정조치 미 이행.
 - 또한 농지 3필지 1,199㎡를 축사부지로 불법 전용한 자에 대하여 원상복구명령 등 적정한 행정조치 없이 방치함.

⇒ 행정상 : 주의

① 검사미필자동차 사후관리 소홀

- 자동차관리법 제3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 소유지는 신규등록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하고
 - 미이행한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
- 항녕군 ○○○○과에서는 정기검사 미필자에 대해 과태료(382백만원)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등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므로써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 운행토록 한 사실이 있음.

⇒ 행정상 : 시정

图 특정 토양오염 유발시설 관리소홀

-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특정토양 오염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·군수에게 신고하고 같은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기적으로 토양오염도 검사를 받아야 하며,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도
- 창녕군 ○○○○과에서는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토양오염검사 미실시 6개소, 지연 검사 7개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 또는 행정조치 미이행
- 또한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한 변경신고사항 중 상호 3건, 대표자 25건과 오염도검사결과 88건 등을 신고대장 등에 기록 및 유지관리 하여야 함에도 미 이행함.

⇒ 행정상 : 시정